

의안
번호

589

우리동네키움센터 성북3,10호점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보건복지위원회

우리동네키움센터 성북 3,10호점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2026. 04. 16.

전문위원 한 미 경

1. 제안경위

- 가. 제 출 자 : 성북구청장
- 나. 의안번호 : 제589호
- 다. 제출일자 : 2026. 04. 03.
- 라. 회부일자 : 2026. 04. 07.

2. 제안이유

- 가. 「아동복지법」 제44조의2 및 「서울특별시 성북구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라 우리구 아동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방과후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우리동네키움센터 14개소를 위탁·운영하고 있음.
- 나. 「우리동네키움센터 성북3,10호점」의 위탁기간 만료가 예정됨에 따라 시설 운영의 연속성을 유지하고 안정적인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역량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하고자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2(승인 및 동의)에 의거 민간위탁 사전 동의를 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위탁시설 현황

시설명	유형	위치	규모	정원	위탁법인	개소일
					협약기간	
우리동네키움센터 성북3호점	일반형	아리랑로 27-3, 2~3층 (동선동)	149㎡	30명	사회적협동조합 행복한아이	21.09.01
					2021.09.01~2026.08.31	
우리동네키움센터 성북10호점	일반형	종암로25길 29, 2층 (종암동)	168㎡	30명	함께살이성북 사회적협동조합	21.09.01
					2021.09.01~2026.08.31	

나. 위탁운영 개요

- 위탁기간 : 위탁계약 체결일로부터 5년
- 위탁사무 : 「우리동네키움센터 성북3,10호점」 관리·운영에 관한 사무
 - 우리동네키움센터 성북3,10호점 운영 업무 일체
 - 우리동네키움센터 성북3,10호점 시설물 등 수탁 재산의 유지·관리
 - 기타 초등 방과후 돌봄서비스 증진을 위하여 위탁자가 정하는 사업 등
- 수탁자격 :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 사회적협동조합
- 선정방법 : 공개모집, 수탁기관선정위원회 심의·선정
- 지원예산 : 연간 200,000천원 내외
 - ※ 인건비(센터장 및 돌봄교사), 운영비 및 급식비 포함

4. 참고사항

- 추진근거
 - 「아동복지법」 제44조의2
 - 「서울특별시 성북구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
 -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4조의2

5. 검토의견

□ 동의안의 개요

- 본 동의안은 우리동네키움센터(이하 “키움센터”라 한다) 2개소의 민간 위탁 기간이 2026. 8. 31.자로 각각 만료됨에 따라 키움센터 관리·운영에 관한 사무를 재위탁 추진하고자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이하 “성북구 민간위탁 조례”라 한다) 제4조의2(승인 및 동의)에 따라 성북구의회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것임.

□ 주요내용

- 키움센터 2개소의 위탁기간 만료에 따라 수탁기관을 공개모집하고, 수탁 기관 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 심의를 거쳐 재위탁을 추진 하여 5년간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임.
- 키움센터는 「아동복지법」 제44조의2 및 「서울특별시 성북구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시설로 초등학교의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 동안 방과 후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재위탁 대상시설 현황은 다음과 같음.

〈민간위탁 대상 시설 현황〉

시 설 명	유형	위치	규모	정원	위탁법인 협약기간	개소일
					우리동네키움센터 성북3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 성북10호점	일반형	종암로25길 29, 2층 (종암동)	168㎡	30명	함께살이성북 사회적협동조합 2021.09.01~2026.08.31	21.09.01

□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 키움센터 운영사무는 「아동복지법」 제44조의2¹⁾ 및 「서울특별시 성북구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제3항²⁾에서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어 민간위탁의 법적요건을 갖추고 있고, 키움센터 업무는 특수한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무라는 점에서 본 민간위탁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됨.
- 구의회 동의 후 「성북구 민간위탁 조례」 제7조³⁾에 따라 공개모집 후 선정위원회를 거쳐 수탁기관을 선정하고, 5년간 위탁하고자 하는 등 민간위탁 관련 규정과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 종합의견

- 본 동의안은 「성북구 민간위탁 조례」 등의 관련 규정에 따라 제출된 안건으로, 사무의 민간위탁 요건도 충족하고 있고, 구의회 동의 후 공개모집 및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재위탁을 추진하는 등 관련 규정과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1) 「아동복지법」 제44조의2(다함께돌봄센터) 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초등학교의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 동안 다음 각 호의 돌봄서비스(이하 "방과 후 돌봄서비스"라 한다)를 실시하기 위하여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아동의 안전한 보호, 2. 안전하고 균형 있는 급식 및 간식의 제공, 3. 등·하교 전후, 야간 또는 긴급상황 발생시 돌봄서비스 제공, 4. 체험활동 등 교육·문화·예술·체육 프로그램의 연계·제공, 5. 돌봄 상담, 관련 정보의 제공 및 서비스의 연계, 6.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방과 후 돌봄서비스의 제공

②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운영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2) 「서울특별시 성북구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돌봄시설의 설치·운영) ③ 구청장은 돌봄시설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돌봄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④ 돌봄시설의 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3)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7조(수탁기관 선정) ① 수탁기관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② 수탁 대상기관을 공개모집할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위탁사무의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하게 하고, 해당분야의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서울특별시 성북구 민간위탁 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에서 제5조에서 정한 선정 기준에 적합한 수탁기관을 선정하도록 한다.